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24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이준석 · 이주영 · 천하람
김재섭 · 김상훈 · 최은석
최수진 · 박성민 · 김승수
안철수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자전거에 모터·배터리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금지·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최근 고유가 상황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승용차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관련 개조 키트 판매와 개조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까지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이렇게 개조된 전기자전거는 KC 인증 등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정 최고속도(시속 25km)를 초과하여 운행되거나 배터리 내구성 저하로 인한 화재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상 문제가 크며, 실제로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는 최근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조행위 자체는 법령상 규

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24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833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
2.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

제24조 중 “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를 개조한 자”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833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u>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u><신 설></u> ③·④ (생 략) 제24조(벌 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u>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법률 제21833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u> 1. <u>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u> 2. <u>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u>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벌 칙) ----- -----<u>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u> ----- -----.